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1
----------	-----

제출연월일 : 2001.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사무의 위임중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장에게 위임되어 왔으나 2000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 이 지적되어 위임한 인사권중 일부를 환수하고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여 인사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증평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소속 공무원 임용권중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권한 위임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전보권 위임
- 충북과학대학장에게 부교수이하의 임용권 위임

## □ 근거법령 : 따로 붙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총무과란중 사무명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출장소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 북 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지방연구직·지도직의 호봉승급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농업기술 원장	"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충청북도 개발사업소장	"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 신 구조문대조표

[별표 1]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총무과	1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총무과	1	출장소 소속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신설>				1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학내전보권 업무포수이하 임용권	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4항
총무과	1	(생략)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4항	총무과	2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4항
	2	지방연구관·지도관의 호봉승급 지방연구사·지도사 전보권 및 호봉승급	농업기술원장	"		3	지방연구직·지도직의 호봉승급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지도사·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전보권	농업기술원장	"
	3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부(部) 전보권	보전환경 연구원장	"		4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전환경 연구원장	"
	4	7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재전보권	충청북도 개별사업 소장	"		5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재전보권	충청북도 개별사업 소장	"
	5	7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재 및 지소간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6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재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6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소재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		7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재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
	7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소재 및 지소간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8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재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 관계법령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5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55조 (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